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1432 |
|----------|-------|

발의연월일 : 2025. 7. 11.

발 의 자 : 엄태영 · 김상훈 · 김승수  
유상범 · 윤한홍 · 정동만  
박충권 · 박덕흠 · 조지연  
박정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목적물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가 빈발하면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이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농어업 경영의 회복력 또한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 발생 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보험목적물을 임시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목적물 확대를 위하여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매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

화하고 재해 복구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어업재해가 발생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보험목적물을 임시로 확대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지정 기간, 절차, 적용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목적물 임시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하였거나 진행 중인 농어업재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보험목적물) ① (생    략)                           | 제5조(보험목적물) ① (현행과 같<br>음)                                                                                                                                                                                                                                                                                                        |
| <u>&lt;신    설&gt;</u>                           |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br/>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br/>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어업<br/>재해가 발생하여 농어업 경영<br/>의 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br/>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농<br/>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br/>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br/>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br/>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br/>아니하고 일정 기간 보험목적<br/>물을 임시로 확대 지정할 수<br/>있다. 이 경우 임시 지정 기간,<br/>절차, 적용 범위 및 그 밖에 필<br/>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br/>한다.</u> |
| ②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u>노력하여<br/>야 한다.</u> | ③ -----<br>----- <u>매년</u> 대통<br>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br>험목적물의 범위를 재검토하고<br><u>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u>                                                                                                                                                                                                                                   |